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8. 11. 29.>

건축 · 대수선 · 용도변경 신고필증

•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
건축구분	신고번호
건축주	
대지위치	
지번 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	
대지면적 ㎡	

건축물명	주용도
건축면적 ㎡	건폐율 %
연면적 합계 ㎡	용적률 %

동 고유번호	동 명칭 및 번호	연면적(㎡)	동 고유번호	동 명칭 및 번호	연면적(㎡)

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(변경)신고서에 대하여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신고필증을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210mm×297mm[보존용지(2종) 70g/㎡]